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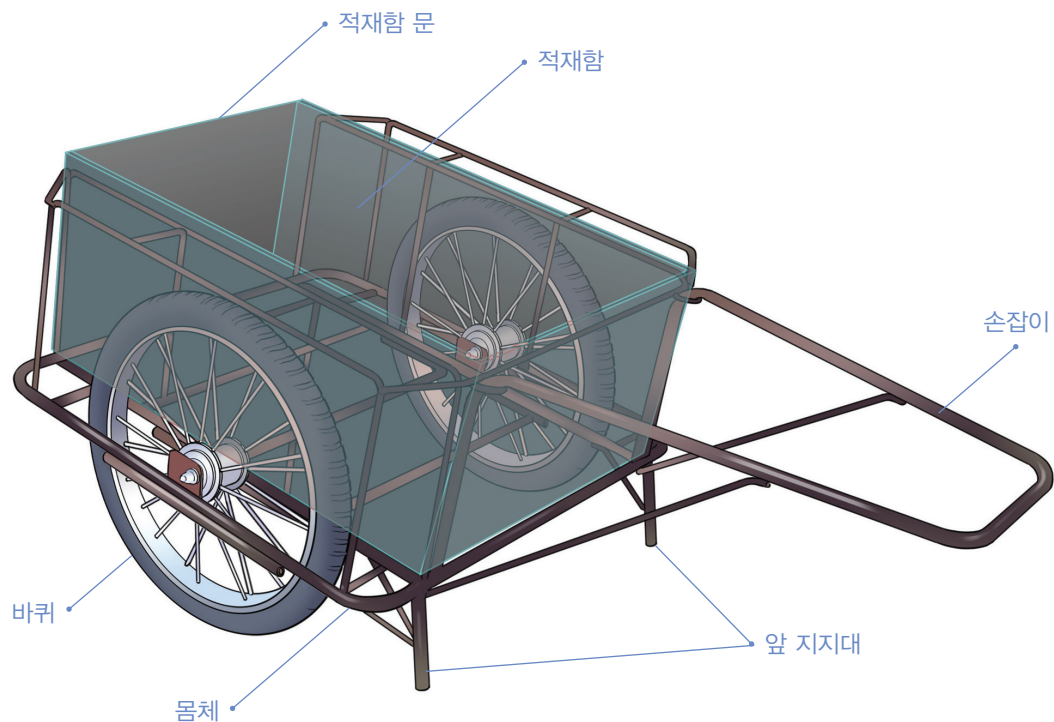
리어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리어카란?

짐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바퀴가 두 개인 수레를 말하며 처음에는 자전거 뒤에 다는 고무바퀴의 이론차였으나 차차 사람이 직접 끌게 되었다.



● 리어카 구조 ●

- 일반리어카 : 몸체, 적재함(합판, 목재), 바퀴, 손잡이, 앞지지대, 적재함 문, 완충타이어 등
- 콘크리트리어카 : 몸체, 적재함(철), 바퀴, 손잡이, 앞지지대 등

● 리어카 특징 ●

- 일반리어카 : 물건을 인력으로 가까운 거리를 운반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
- 콘크리트리어카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모래, 벽돌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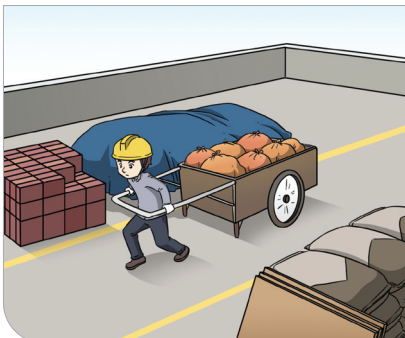


주요 위험요인

- ✓ 벽, 구조물, 차량 등과 충돌
- ✓ 적재물의 낙하
- ✓ 이동 중 바닥에 넘어짐
-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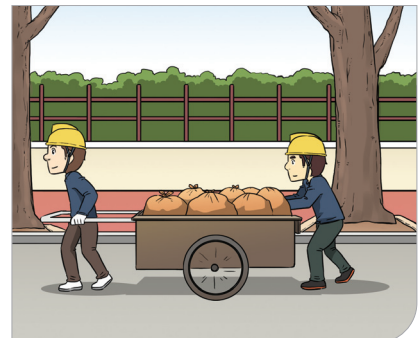
- 이동경로상의 바닥상태, 장애물 유무 확인 철저
 - 바닥에 턱, 요철, 틈,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
 - 바닥에 눈, 비, 빙판, 물기 등이 있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주의
- 안전한 운반방법 준수
 -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거나 완전히 넣을 수 없는 물건 적재 금지
 - 물건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경우 밧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
 - 물건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적재
 - 바닥의 경사, 리어카의 무게, 이동 속도로 인하여 제어가 곤란하지 않도록 주의
- 충돌재해 예방
 - 리어카에 야간 반사판, 충돌 주의 표지판 부착
 - 차량 등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주의하며 이동
 - 출입구, 좁은 통로, 회전할 때 손이 끼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고 주의
 -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발뒤꿈치가 앞 지지대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
 - 보조작업자 발이 바퀴에 치이지 않도록 주의
- 근골격계질환 예방
 - 물건의 형상, 무게,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하고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무겁거나 큰 물건은 2인 이상이 함께 작업
 - 작업 전 · 후 스트레칭 실시



장애물이 없는 통로로 이동



리어카에 반사판 · 표지판 등 부착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공동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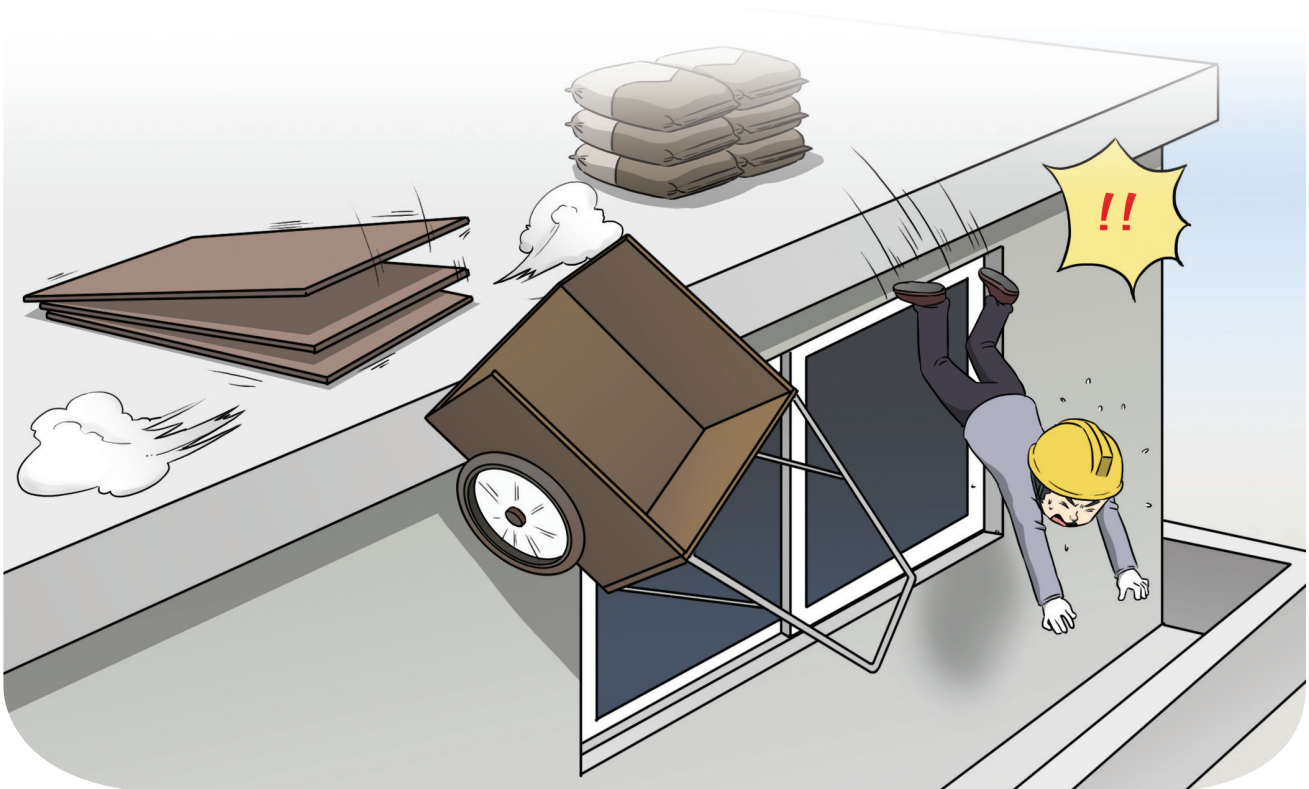


재해사례 : 철판 적재작업 중 리어카에 밀려 추락 사망

개요

공장 옥상에서 4명의 작업자가 리어카를 이용하여 방치된 철판을 치우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 적재함에 실은 철판(3장)이 적재함 밖으로 넘어지는 반발력으로 리어카가 뒤로 밀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재해자가 리어카와 함께 공장 옥상 슬라브에서 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 철판 자원(1장 당) : 폭 0.5m X 길이 2.5m, 무게 60kg



발생원인

- 리어카에 적재가 어려운 긴 물건을無理하게 적재
-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

예방대책

- 물건의 형상, 무게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운반설비 선정
- 물건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
-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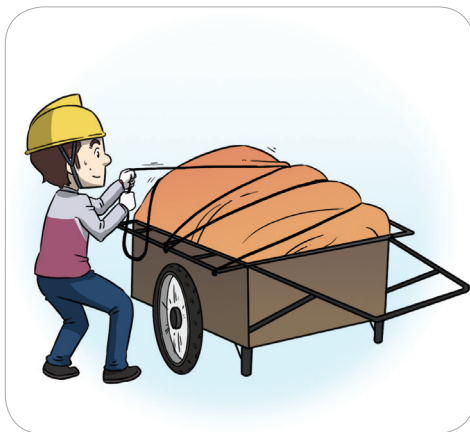
안전수칙

작업 전

- 바퀴의 공기압, 회전상태, 볼트의 체결 상태 등 작업 전 점검하여 정비한다.
- 바닥에 턱, 요철, 틈,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바닥에 눈, 비, 빙판, 물기 등이 있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제거한다.
- 물건의 형상, 무게,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한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스트레칭 실시

작업 중

-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거나 적재함에 완전히 넣을 수 없는 큰 물건 적재하지 않는다.
- 물건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경우 밧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 물건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적재한다.
- 바닥의 경사, 리어카의 무게를 고려하여 리어카를 조작하고 과속하지 않는다.
- 차량 등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주의하며 이동한다.
- 출입구, 좁은 통로, 회전할 때 손이 끼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발뒤꿈치가 앞 지지대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보조작업자 발이 바퀴에 치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밧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



큰 물건 적재 금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 (전도의 방지)
 - 제666조 (작업자세 등)

- 제22조 (통로의 설치)

